

행촌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결정[안]에 관한 의 건 청 취 심 사 보 고

2005. 3. 21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3월 4일 · 종로구청장
 나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21일
 다. 상정일자 : 제14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 제1차(2005. 3. 21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김 명 식)

가. 제안이유

-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유지상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노후·불량한 무허가 소규모가옥들이 사적 제10호 서울성곽주변에 밀집되어 있어 정비가 요구되는 바, 기존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1) 행촌구역의 위치 및 연적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적(m ²)	비 고
기 존	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	행촌동 171번지 일대	60,309.48m ²	

2) 정비기반시설(완충녹지) 변경결정 위치 및 규모

구 분	위 치	정 비 기 반 시 설			비 고
		변 경 전	변 경 후	면적(m ²)	
신 설	종로구 행촌동 210 번지일대	-	시설녹지(완충녹지) (중)	2,088.7 1,643.3	

3) 토지이용계획

지구 명	위 치	시행 방법	변 경 내 용			
			구분	당초면적(㎡)	변경면적(㎡)	비고
행촌 지구	중로구 행촌동 210 번지 일대	현지 개량	계	60,309.48	60,309.48	
			주택용지	42,664.86	41,021.56	감)1,643.3㎡
			택 지 공 동 이 용 사 설	마을회관	120.5	120.5
				주차장	276.8	276.8
				어린이놀이터	198.6	198.6
			공공 시설	도 로	14,207.72	14,207.72
				보행자도로	1,044.0	1,044.0
				완충녹지	1,797.0	3,440.3 중)1,643.3㎡

3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
4. 意見 採擇 : 의 견 없 음

5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